

[별표 5의20] <신설 2012.2.15>

이륜자동차의 차폭등 광도기준(제77조의2제1호 관련)

1. 최대광도

4칸델라 이상 60칸델라 이하일 것. 다만, 전조등과 결합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.

2.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

측정점(각도)		최소광도(칸델라)
20L	5U	0.4 이상
	5D	0.4 이상
5L	10U	0.8 이상
	10D	0.8 이상
10L	5U	0.8 이상
	H	1.4 이상
	5D	0.8 이상
V	5U	2.8 이상
5L	H	3.6 이상
V		4.0 이상
5R		3.6 이상
V	5D	2.8 이상
10R	5U	0.8 이상
	H	1.4 이상
	5D	0.8 이상
5R	10U	0.8 이상
	10D	0.8 이상
20R	5U	0.4 이상
	5D	0.4 이상

※ 비고: “측정점”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(°)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.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“U” 및 “D”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(°)를 말하고, “L” 및 “R”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(°)를

말한다.